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8
----------	------

제출연월일: 2022. 7.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추어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재배치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694명”에서 “697명”으로 3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감원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1) 총 계 : 694명 → 697명(증 3명)
- 2) 일반직 : 691명 → 694명(증 3명)
 - 6급 이하 : 640명 → 643명(증 3명)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담당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8503호, 2022. 7. 11.)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

마.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4명이며”를 “69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3명”을 “67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제2조(정원의 총수)	-----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		-----	-----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		-----	-----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u>694</u>		-----	<u>697명이며</u> -----	
<u>명</u> 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집행기관의 정원: <u>673명</u>		1. -----	<u>67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1명</u>		2. -----	<u>20명</u>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2% 이내	21.5% 이내	34.5% 이내	30.5% 이내	5.1% 이상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구 분	6급 상당 이상	7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697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94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4	24	2	4	1	13
	6급이하	643			-		
별정직	소계	2			-		
	5급상당이상	1			-		
	6급상당이하	1			-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2022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6급 2명(증) : 6급 16호봉 기준으로 산정 (80,976,270원)

- 7급 7명(증) : 7급 7호봉 기준으로 산정 (47,022,070원)

- 8급 5명(감) : 8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 (37,169,820원)

- 9급 1명(감) :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 (31,976,170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지출	6급 2명	704,821,520	132,756,360	136,739,050	140,841,220	145,066,450	149,418,440
	7급 7명	1,747,525,830	329,154,490	339,029,120	349,199,990	359,675,980	370,466,250
	소계(a)	2,452,347,350	461,910,850	475,768,170	490,041,210	504,742,430	519,884,690
수입	8급 5명	986,698,050	185,849,100	191,424,570	197,167,300	203,082,310	209,174,770
	9급 1명	169,765,780	31,976,170	32,935,450	33,923,510	34,941,210	35,989,440
	소계(b)	1,156,463,830	217,825,270	224,360,020	231,090,810	238,023,520	245,164,210
총비용(a-b)		1,295,883,520	244,085,580	251,408,150	258,950,400	266,718,910	274,720,480

II.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1,295,881	244,085	251,408	258,950	266,718	274,720
국 비			-	-	-	-	-
구 비		1,295,881	244,085	251,408	258,950	266,718	274,720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과 협의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권민화(052-290-314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 비	244,085	251,408	258,950	266,718	274,720	1,295,881
합 계	244,085	251,408	258,950	266,718	274,720	1,295,881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기 편성요구된 2022년도 인건비로 충당(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권민화(052-290-3142)